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08호 (2011. 09. 0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5호 (2012.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033호 (2013. 0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16호 (2013. 07.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022호 (2015. 02. 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2호 (2016. 01. 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038호 (2016. 03.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9호 (2016.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7호 (2017.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8호 (2018.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7호 (2019. 0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002호 (2020. 01. 0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07. 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0호 (2020.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7호 (2021.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8호 (2022.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4호 (2024. 12.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2025. 12. 26.)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1.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의 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활동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활동지원급여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5.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한다.

7.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8.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9.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의 이동

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원거리 교통비는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급여 제공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1.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종합점수

구 분	산출방법
성인(만19세 이상)	종합점수 = $(0.01225X_1 + 0.05583X_2 + CX_3) \times 30$
아동(만19세 미만)	종합점수 = $(0.01574X_1 + 0.05583X_2 + CX_3) \times 30$

1) X_1은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_1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2) X_2는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_2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3) X_3는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_3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4) C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_1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이다.

C 계수		0.0374	0.0415	0.0519	0.1038	0.1453	0.2075	0.2496
X_1영역	성인	115~199점	200~254점	255~289점	290~359점	360~429점	430~499점	500점 이상
합산점수	아동	89~154점	155~197점	198~224점	225~279점	280~333점	334~387점	388점 이상

5)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774,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7,257,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739,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6,221,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703,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5,18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66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4,14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62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3,112,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59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2,076,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558,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40,000원

다. 특별지원급여

분 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85,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49,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49,000원

1) ① 및 ②의 경우에는 6개월, ③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특별지원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시간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조정한다.

가. 활동지원급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활동지원급여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차감 없음)	주간활동 확장형 (일부 차감)
1구간	8,293,000원	7,914,000원
2구간	7,774,000원	7,395,000원
3구간	7,257,000원	6,878,000원
4구간	6,739,000원	6,360,000원
5구간	6,221,000원	5,842,000원
6구간	5,703,000원	5,324,000원
7구간	5,181,000원	4,802,000원
8구간	4,665,000원	4,286,000원
9구간	4,148,000원	3,769,000원
10구간	3,629,000원	3,250,000원
11구간	3,112,000원	2,733,000원
12구간	2,593,000원	2,214,000원
13구간	2,076,000원	1,697,000원
14구간	1,558,000원	1,179,000원
15구간	1,040,000원	661,000원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월 한도액의 적용

가. 월 한도액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와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월 한도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익월(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개시 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월 중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다만, 수급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라.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특별지원급여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넘겨 사용하거나, 다음 달에서 일부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넘기거나 당겨 사용하는 것과 본인부담금 환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월 한도액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의 월 한도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7,270원 가산수당 3,3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5,900원 가산수당 4,95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5,900원 가산수당 4,950원

1) 급여제공 시간이 30분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한다.

가.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③의 경우는 동일 활동지원사를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한다.

나. 가산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급여 제공시간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시간 당 금액이며, 수급자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산정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급여비용 외에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원거리 교통비는 1일 9,000원 이내로 산정한다.
2) 원거리 교통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
3) 원거리 교통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지원사 1인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지원사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지원사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방문목욕

분 류	금 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8,99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80,230원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구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라.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마.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3. 방문간호

분 류	금 액
① 30분 미만	42,88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원
③ 60분 이상	64,690원

가.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원거리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 방법은 제3장제1호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1회당 발급비용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3,18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71,28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6,26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3,500원

1.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부 칙(제2025-226호, 2025.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경과조치 대상자의 월 한도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경과조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용할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2,041,000원	1,627,000원	1,230,000원	815,000원

②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4,718,000원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385,000원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349,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4,718,000원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385,000원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349,000원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85,000원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49,000원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175,000원
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	694,000원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49,000원
⑫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1,264,000원